

#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2014. 03. 14(금)  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02. 28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4. 02. 28

라. 상정일자 : 2014. 03. 14(제21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오병집 안전행정국장
- 검토보고 : 왕동향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관련한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해당 세목규정을 정비하고,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목규정 정비(안 제2조)
-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공탁규정 삭제(안 제15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가세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등 「지방세기본법」을 개정(2014. 1. 1. 시행)함에 따라 관련된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
- 안 제2조(세목)은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고, 기존에는 주민의 소득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과 종업원의 급여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되었으나, 법령 개정으로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라 구분의 필요성이 없어진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며,
- 안 제15조(교부금전의 예탁)은 채권자 등에 대한 교부금전 발생시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시 금고에 예탁하도록 하였던 기존 조항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시 금고에 예탁하여 처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.
- 안 제51조(시행규칙)은 현재 「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(2014. 1. 13 제정) 운영하고 있는 바,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음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해당없음

### 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이용범, 차준택, 이상철, 홍성욱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### 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4명, 찬성 : 4명, 반대 : 0명)

## 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## 8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: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

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6. 지방소득세

제15조 제목 “(공탁 등)”을 “(교부금전의 예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”를 “법 제72조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세목) ① (생략)</p> <p>②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6. 지방소득세(소득분)</p> <p>7. (생략)</p> <p>③~④ (생략)</p> <p>제15조(공탁 등)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<u>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 다만, 시 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설&gt;</p>	<p>제2조(세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지방소득세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<u>교부금전의 예탁</u>) ① ----- ----- -----<u>법 제72조에 따라</u>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단서삭제&gt;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1조(<u>시행규칙</u>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<u>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